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1216호(號) 1916(大正 5)년 8월 21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92호(號)

1913(大正 2)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5호(號) 일본·만주 연락운수 여객 및 수하물 임률규칙 [日滿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賃率規則] 제1편(編) 임률적용규칙(賃率適用規則) 중(中) 1916(大正 5)년 9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한다.

1916(大正 5)년 8월 21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제6조(條) 제1항(項)의 제3호(號)를 아래와 같이 개정(改正)한다.

①조선철도(朝鮮鐵道) 및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에서는, 보통열차(普通列車)에 대한 1등(等) 및 2등의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소지(所持)한 여객(旅客)은 소정(所定)의 급행좌석료(急行座席料)를 지불(支拂)하고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의 급행열차(急行列車) 또는 부산(釜山)·장춘(長春) 간(間) 조선·만주[鮮滿] 직통특급열차(直通急行列車)에 승차할 수 있다. 단, 보통열차에 대한 2등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소지(所持)한 여객은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의 구역(區域)에 대하여 보통(普通) 2등(等)과 급행(急行) 2등과의 운임(運賃)의 차액(差額)도 지불할 것을 요(要)한다.

②급행열차에 대한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소지하는 여객이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의 급행열차 또는 부산(釜山)·장춘(長春) 간(間) 조선·만주[鮮滿] 직통특급열차(直通急行列車)에 승차하고자 할 때는 소정(所定)의 특별좌석료(特別座席料)를 지불할 것을 요(要)한다.

③급행좌석료(急行座席料) 및 특별좌석료(特別座席料)에는 본조(本條) 제2항에 규정한 침대료(寢臺料)를 포함(包含)한다.

·제7조 제1항의 제2호 중(中) 「동청철도(東淸鐵道), 우수리철도(烏蘇里[Ussuri]鐵道) 및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에서는」을 「동청철도(東淸鐵道), 우수리철도(烏蘇里[Ussuri]鐵道), 철도원(鐵道院) 및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에서는」으로, 「철도원(鐵道院) 및 조선철도(朝鮮鐵道)에서는」을 「조선철도(朝鮮鐵道)에서는」으로 개정(改正)한다.

·제7조 제3항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한다.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유효기간(有效期間) 내(內)에서는 여행중단(旅行中斷) 시간(時間)에 제한(制限)을 부가(附加)하지 않는다. 여행중단 후(後) 재차 여행을 계속하는 여객은 번호부(番號附) 좌석(座席) 또는 침대(寢臺)의 사용(使用)에 대하여는 다시 특별추가요금(特別追加料金)을 지불해야 한다. 단, 철도원(鐵道院)의 급행열차에 계속 승차하고자 하는 자(者)는 다시 급행열차권(急行列車券)을 구입(購入)하고, 또 침대(寢臺)를 사용할 때는 침대요금(寢臺料金)도 지불하며,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의 급행열차 또는 부산(釜山)·장춘(長春) 간(間) 조선·만주[鮮滿] 직통특급열차(直通急行列車)에 계속 승차하고자 하는 자(者)는 소정(所定)의 좌석료(座席料)를 지불할 것을 요(要)한다.